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검 토 보 고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의 근거법 제정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6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                           | 1  |
| III. 주요내용 .....                          | 1  |
| IV. 검토의견 .....                           | 3  |
| 1. 총괄 검토 .....                           | 3  |
| 가. 제정안의 제정 취지 및 제정 필요성 .....             | 3  |
|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                | 5  |
| 2. 주요 조문별 검토 .....                       | 7  |
| 가. 정의(제정안 제2조) .....                     | 7  |
| 나.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제정안 제5조) .....         | 9  |
| 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제정안 제8조) .....              | 11 |
| 라. 사회 노동인권교육(제정안 제9조) .....              | 18 |
| 마. 노동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등(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 21 |

## I. 제안경위

2025년 2월 3일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모든 근로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근로기준에 관한 권리,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인권을 가짐.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쉬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 III.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 IV. 검토의견

### 1. 총괄 검토

#### 가. 제정안의 제정 취지 및 제정 필요성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짐을 명시하고, 국가로 하여금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sup>1)</sup>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노동기본권 형성을 위한 법률과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자가 준수할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1)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제정안은 학생, 청소년, 근로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에 관하여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노동관 함양을 유도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등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제정안과 같이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될 수 있으며, 「경제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겠음.<sup>2)</sup>

다만, 사회 각 분야의 전문분야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개별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해 정부 차원의 고용노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sup>3)</sup>

한편, 제정안과 유사하게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2) 개별 분야에 대한 교육의무 관련 입법례는 <참고 1> 국민 등 대상 의무교육 관련 법률 주요 내용을 참고

3)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있는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2204289호)이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학교, 사회 등에서 전 국민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모두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4조),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제6조), 학교 노동인권교육(제8조)·사회 노동인권교육(제9조)을 위한 정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과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기관을 지정(제10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체계 >**

| 구 분                       | 내 용                                                                                                                                          |
|---------------------------|----------------------------------------------------------------------------------------------------------------------------------------------|
| 제1조<br>(목적)               |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
| 제2조<br>(정의)               | 노동인권교육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교육 |
| 제3조<br>(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름                                                                                                           |
| 제4조<br>(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자체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br>-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여성 근로자 및 이주배경 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사항 포함                              |
| 제5조<br>(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br>- 위원장 : 고용노동부차관<br>- 당연직 :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br>- 위촉직 :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제6조<br>(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 제7조<br>(노동인권교육 추진성과 평가)   |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                                                                                                           |
| 제8조<br>(학교 노동인권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
| 제9조<br>(사회 노동인권교육)        | 국가·지자체는 노동인권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재 개발·보급 등 사업을 추진                                                                |
| 제10조<br>(노동인권교육 기관의 지정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
| 제11조<br>(지정의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노동인권교육기관 지정 취소                                                                                                 |
| 제12조<br>(업무의 위탁)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 제13조<br>(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 2. 주요 조문별 검토

### 가. 정의(제정안 제2조)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을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으로,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노동인권교육’으로 각각 정의함.

| 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br>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br>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 |

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 2) 검토의견

제정안은 정의조항을 통해 “노동교육”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 및 기타 근로하는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각종 권리에 대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헌법상 권리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정의조항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재 노동문제에 관한 이념 대립과 이로 인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으로,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상황임. 일례로,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노동교육 포함 여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바,<sup>4)</sup> 노동과 관련한 각종 교육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sup>5)</sup>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한국일보, ““교육과정에 노동 교육 넣어야” 주장에 난입한 보수단체 회원...공청회 파행”, 2022.10.9.

5) 조선에듀, “학교 노동교육 의무화?... ‘편향성 우려’ 팽배”, 2021.4.13.

## 나.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제정안 제5조)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임.

노동인권교육위원회는 ①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 ②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③노동인권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④노동인권교육 업무의 협력·조정, ⑤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함.

| 제 정 안                                                                                                                                                                                                                                               |
|-----------------------------------------------------------------------------------------------------------------------------------------------------------------------------------------------------------------------------------------------------|
| 제5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br>1. 노동인권교육의 정책방향<br>2. 제6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br>3. 제7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br>4. 노동인권교육 업무의 협력·조정 |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검토의견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관계 부처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바,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음.

다만,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6)이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sup>7)</sup>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향후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제정안 제8조)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정부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감은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관

---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 제 정 안                                                                                                                                                                                                                                                                                                                                                                                                                                                                     |
|---------------------------------------------------------------------------------------------------------------------------------------------------------------------------------------------------------------------------------------------------------------------------------------------------------------------------------------------------------------------------------------------------------------------------------------------------------------------------|
| <p>제8조(학교 노동인권교육)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

## 2) 검토의견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sup>8)</sup>는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

8)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있음.

2018년부터 실시중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 ‘근로자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 근로자 권리, ‘노동권 침해구제’, ‘청소년 노동인권’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이를 범교과 학습주제 내용으로 설정하여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인권교육’이 배제되어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sup>9)</sup>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취지임.

청소년 또는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근로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결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기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

9) 매일노동뉴스, “‘노동’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표류하는 ‘노동인권교육’”, 2022.9.1.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sup>10)</sup>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권한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sup>11)</sup>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sup>12)</sup>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의 심의 요건으로 ①교육부장관의 요

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립·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

청, ②시·도 교육감 협의체의 요청, ③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요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통일교육 지원법」의 경우 제정안과 유사하게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 등의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교육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이를 종합할 때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

---

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함께 각 분야별 학교 교육에 대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현행 교육과정에도 노동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sup>13)</sup>되어 있고, 노동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반영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심의·의결하여 정하도록 한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학생 교육의 소관부처인 교육부에서 관련되는 법률로 추진하는 것이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학교교육 관련 참고 입법례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13)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범교과 학습주제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과(일과 노동의 가치), 경영·금융(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일반사회(노동문제 등 사회문제 탐색), 현대사회와 윤리(노동 가치 존중), 인간과 경제활동(노동인권, 기업가 정신 등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법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교육지원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라. 사회 노동인권교육(제정안 제9조)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①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②교재 개발·보급, ③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제 정 안                                                                                                                                      |
|--------------------------------------------------------------------------------------------------------------------------------------------|
| 제9조(사회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1.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2. 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검토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므로,<sup>14)</sup> 국민 모두는 노동기본권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라 고용노동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등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음.<sup>15)</sup>

14)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5)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각종 지원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장관에게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교재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해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는 있으나,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입법취지에 맞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마. 노동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등(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인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노동인권교육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한편,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제 정 안                                                                                                                                                                                                                                                                                                                                                     |
|-----------------------------------------------------------------------------------------------------------------------------------------------------------------------------------------------------------------------------------------------------------------------------------------------------------------------------------------------------------|
| 제10조(노동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라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br>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1.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및 활용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노동인권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정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동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검토의견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중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직접 교육사업 외에도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등 노동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sup>16)</sup>을 고려할 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외의 별도의 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노동(인권)교육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원이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16)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 참고 1 국민 등 대상 의무교육 관련 법률 주요 내용

### □ 경제교육지원법(소관: 기재부)

| 주요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줄 수 있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함</li> <li>□ 제4조(국가의 임무)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 기회 제공, 국민 경제에 적합한 경제 교육 내용 마련, 경제교육인력의 체계적 양성 노력</li> <li>□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장관은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인력 양성 및 활용 등 경제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중립적·효율적으로 추진</li> <li>□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경제교육정책 수립·조정, 경제교육사업 적정성·중립성,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의·평가</li> <li>□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교육인력 연수·활용,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 경제교육 등의 사업 수행</li> </ul> </li> </ul> |

### □ 통일교육지원법(소관: 통일부)

| 주요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함,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li> <li>□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통일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등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li> </ul> </li> <li>□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각 부처 및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국민의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li> </ul> </li> <li>□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교육센터로 지정 가능</li> <li>□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장관은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li> </ul> </li> </ul> |

## □ 법교육지원법(소관: 법무부)

| 주요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민의 인식 제고,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 포함</li> </ul> </li> <li>□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li> <li>□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li> <li>□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초·중등·고등교육법 제2조)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li> <li>□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li> </ul>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관: 환경부)

| 주요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학교장은 학교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li> <li>-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li> </ul> </li> <li>□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li> </ul> </li> <li>□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을 수립</li> <li>□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를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계획 수립·평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등 심의</li> </ul> </li> <li>□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 및 어린이집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li> </ul> </li> </ul> |

| 주요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li> <li>□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 서의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 포함</li> </ul> </li> <li>□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 포함</li> </ul> </li> <li>□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li> </ul>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소관: 산림청)

| 주요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li> <li>□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 립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교육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산림교육전문가 육성·지원방안,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산림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포함</li> </ul> </li> <li>□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 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계획 수립, 산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산림교육프 로그램 인증, 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청장 또는 자치단체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li> </ul> </li> <li>□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청장은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국가·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 산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li> </ul> </li> </ul> |

## 참고 2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 현황

| 시도 | 조례명                        | 제정일         |
|----|----------------------------|-------------|
|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2018.01.04. |
| 부산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018.11.14. |
| 인천 |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2020.07.13. |
| 광주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2019.06.01. |
| 대전 |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 2015.08.14. |
| 울산 |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2020.12.17.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2019.09.30. |
| 경기 |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 2016.01.04. |
| 강원 |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2019.07.05. |
| 충북 |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 2019.07.12. |
| 충남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15.12.30. |
| 전남 |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 2016.10.27. |
| 경남 |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2021.05.06.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 2019.11.20. |

\* 14개 시·도교육청 포함하여 전국 117개 자치단체에서 노동인권 보호(교육) 관련 조례 제정·시행 중(서울시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등)